

사회적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도전과 함의

이 인 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I.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1.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서비스국가

복지국가에서 개인이 기대하는 삶의 보편적 경로는 아동기부터 청년층까지 교육을 거쳐 노동력을 갖추면 노동시장(고용)에 참여하게 되고, 은퇴후에는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전제는 정상적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적절한 임금 수준의 완전 고용 노동시장이 작동되며, 정상적인 노동시장 퇴출 이후에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으로는 고용의 시기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은퇴 후에는 연금제도가, 전 생애에 걸쳐 건강보험이 보장되며, 교육-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 빈곤층(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게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된다. 사회안전망으로는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외에 기업의 근로복지제도와 개인, 친족단위 비공식부문의 상호부조제도(전통적 공동체주의)의 보완적 역할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 경로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유럽의 경우 고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물론이고 교육정책과의 연계와 조정 문제는 국가간 개별정책의 통합과 함께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Begg, 2001; Ferrera,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그 계기는 1997년 대규모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완전고용 노동시장'이 붕괴되었다. 고용의 불안정성 즉 비정규직의 확산과 실업이 일상화되었다. 이로 인해 완전고용을 전제로 했던, 핵심 사회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제도가 그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리고 정규 교육제

도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의 효과가 의심받기 시작한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고용-복지의 경로가 문제가 됨에 따라, 교육과 고용에서 경쟁력을 갖춘 계층, 정규직, 전문직, 선순환적 양육문화, 그리고 이를 대물림할 수 있는 계층과 비정규직, 단순 노동, 허술한 양육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빈곤층(일하는 빈곤층)과 가난을 대물림하는 계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대량생산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인 교육-고용-복지의 분절적 정책으로는 개인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이 과연 노동시장에 적합한 것인가? 더 나아가 학교의 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가?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력”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외계층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고용정책은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상시적 교류체계 구축(학교-노동시장, 노동시장-학교 선순환)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 유급교육휴가제도, 노동력 풀제 도입, 뉴패러다임 등 -가 구축되어야 한다. 직업훈련도 과거의 단기적 직업훈련이 아닌, 학교교육과 연계된 장기적 교육훈련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복지정책 역시 사후적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정책 중심에서 근로연계복지, 미래인적자원 투자 등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사회서비스 관련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진출이 전통적 복지영역에 집중되던 현실에서 근로연계복지, 교육복지영역은 물론이고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사회복지교육체계와 내용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2.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으로 전환

정보사회와 더불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찾아왔다.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핵심의제가 되며,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들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와 시장경제로부터 배제된 소외계층이 대안적

경제에 대한 모색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화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실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서구 각국이 사회적 일자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전제로 하는 취업촉진전략이 한계를 들어냄에 따라, 공공부문을 확대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3섹터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다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04). 첫 번째 단계는 서구의 사회적 일자리 개념을 한국사회에 소개하며 접합을 시도하는 시기로 1998년~2000년까지 약 3년간의 기간에 해당한다. 당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일자리 개념의 뿌리를 서구의 제 3섹터(Third Sector) 이론이나 유럽의 사회경제(Social Economy) 이론에서 찾는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연구결과는 일련의 연구모임과 사회적 일자리 국제심포지움(2000년 12월)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로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활용한 실험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반영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시기로 2000년 10월부터 2003년까지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까지 개념화되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도영역으로 도입하는 시점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사회적 일자리 개념을 자활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특히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나타났다. 물론 사업의 흐름은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자활사업과 더불어 청소년자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원화되는 시기로 2003년 하반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노동부와 실업극복국민재단을 통해 확산되는 시점에 해당한다. 이는 자활사업 내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대상 집단을 달리하는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에게 자활지원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이 보다 자유로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논의는 공공부조제도와 무관한 독립된 고용지원사업의 형태로서 사회적 일자리 추진방안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자활사업으로 제도화된 사회적 일자리 논의는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노동능력 제고와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된 고용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확대에 맞추어 장애인 직

업재활 역시 사회적 일자리 관점에서 재론되고 있다. 2006년 사회적 일자리정책은 새로운 전환의 흐름에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가의 전략으로 선언한 것이다(사회비전 2030).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수준 제고와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II.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을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청소년자활사업, 장애인 직업재활과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1.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

1990년대부터 탈빈곤운동의 중심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심이 전환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의 빈민생활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의 건설 등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색되었다. 1992년 서울 하월곡동의 『건축일꾼 두레』, 1993년 서울시 상계동의 『실과 바늘』 등은 소규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운영과 교육훈련을 중시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생산공동체적 실험은 현재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전형이 되었다(신명호·김홍일, 2002). 그러나 시장진입형 생산공동체의 경우 기술력과 전문성의 부족은 지속적인 생산공동체로서의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신명호, 2003).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 빈곤정책의 변화의 핵심은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기초법의 특성은 연령과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법의 여러 급여 중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 가구별 자활계획에 따라 다양한 관련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이다. 새롭게 제기된 대량실업과 빈곤은 지역복지서비스와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확대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자활사업을 통해 간병 등의 무급봉사활동, 가난한 사람들의 집수리사업, 컴퓨터 등 폐자원재활용사업, 음식물 재활용, 음식나누기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실업빈민들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원과 함께 자활수

급자들은 간병 등의 보호, 재활용, 환경보호 등의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공익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자활사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면서 장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와 곧 바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자활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이인재, 2003). 2005년 12월 시점에서 242개의 자활후견기관, 439개의 자활공동체(2,302명)와 2,014개의 자활근로사업단(35,016명) 그리고 57,266 여명의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다.

5년의 짧은 경험이지만 자활사업의 시행 결과 자활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보호된 시장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로 나타났다. 복지나 환경영역 등에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 간병사업, 보육사업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1)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2004년부터는 자활근로의 유형을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의 4가지로 확대하였다. 시장진입형은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회적일자리형은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무료간병·집수리사업단, 자활사업도우미, 복지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등이 해당한다. 인턴형은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근로유지형은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03년도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의미가 같으며,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참여를 준비하는 형태로,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또는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추가소득 기회 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가 가능한 사업을 의미한다. 근로유지형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 목적인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근로유지형 사업 참여를 통한 능력 향상을 통해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03년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와 유사하다. 시장진입형은 투입예산의 20%이상(2004년 10%, 2005년 20%로 상향)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도시

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의 경우는 근로유지형에 비해 자활공동체로 발전에 대한 전망을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다.

2)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 참여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자활근로 임금’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기는 사업수익금에 의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의미한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은 첫째,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원 기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넷째,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2005년 12월말 시점에서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439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2,302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의 분기당(3개월) 1인당 평균 수익금은 253만원 수준이다.

자활공동체 사업을 통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얻게 되면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에서 벗어나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기간은 사업초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자활공동체 설립 이후 2년(최대 3년까지 가능)으로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의 상당수는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점차 조건부 수급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건부 수급자들 중심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거쳐 설립된 경우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자활공동체의 문제는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의 전망이 불투명하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미비하다는 점이다. 기초법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법 제18조 3항)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런 식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를 통하여 기초법 수급 대상자에서 탈피하는 순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게 되어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꺼리게 된다.

3)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를 말하며,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일자리가 하나의 기업의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 자활공동체가 지향하는 자활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일반적인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표1> 참조). 반면 시민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수행하는 조직이며, 자본 보다는 인간 혹은 노동 중심의 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그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소비자나 지역사회 조직을 포함하여)의 파트너십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다양한 관련 주체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거나 지역사회의 혜택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은 소비자·이용자, 노동자, 자원봉사자, 후원자·지원자 등의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조직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관리와 참여에 근거한 당사자 조직’으로서의 강점을 갖게 된다(문보경, 2006; 노대명 외, 2005).

<표1> 사회적 기업 경제적/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기업적 속성)	사회적 기준(사회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서비스의 지속적 생산 - 고도의 자율성 - 창설 멤버에 의한 자본과 노동의 양면에서의 경제적 리스크의 부담 - 유급노동의 존재라는 특성과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에 의한 참가·수행 - 지역 민주주의 - 자본의 비권력성 - 이윤분배의 제약 -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출처: 문보경, 2006).

자활사업이 배출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컴퓨터 재활용 전문기업인 컴윈이다. 사회적 기업 컴윈의 초기 발전 요인은 ‘재활용사업’ 업종선택의 성공과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자체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재활용사업의 성격과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도입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하였다. 여기에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지원이 합쳐져서 컴윈의 탄생을 가능하였다. 국가의 제도적 준비가 사회적 기업의 출범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컴윈은 성장가능성 있는 업종선택과 공공과 민간의 지원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해결 과제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 조직의 지도력, 경영능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조직내부 상호통제시스템과 갈등해소 기제 역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 제도 차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법제화와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컴윈 사례를 통해 외부의 지원이 사

업의 초기 정착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지속적인 발전은 조직 내부의 리더십과 기업 경영의 전문가 활용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의 경우는 사업 초기부터 조직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와 경영전문가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이인재, 2006).

2.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노인이 일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지자체 주관으로,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지자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경우 참여연령은 65세 이상으로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등 총 20,000개의 일자리가 배정되었고, 6개월간 주 12시간을 근무하며, 1인 월 200,000원 이내의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노동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운영주체가 되고 비영리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총 3,000명을 지원하고 있고, 50세, 또는 55세 이상이 9~10개월 동안 주 20시간 이하 참여하여 1인 월 300,000원 이하의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다. 노동부 이외에도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자활후견기관, 공공근로 사업 프로그램이 있다 (이인재 외, 2004).

2005년에는 사업의 유형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운영주체를 분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공익형 일자리를 전담하며(필요시 위탁수행), 시니어클럽은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전담한다(교육복지형 부분적 수행). 이에 비해 대한노인회는 공익형 일자리사업 위탁수행 및 단순일자리 취업알선을 담당하며, 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회)관 등은 교육복지형 일자리를 전담한다(시장형 일부수행)(<표2> 참조).

<표2>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구분	정의	일자리 예시
공익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교통 등)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방범순찰, 행정기관보조 등

구분		정 의	일자리 예시
교육복지 지향형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 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사업 - 교육강사 파견사업(1:3세대연계)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강사, 건강관리(상담사)등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보호관리
자립지원 형	인력파견형	○지역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파견하는 일자리 - 보수는 수요처에서 부담	-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식당보조원, 주례,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화장실청소원, 주차관리원, 간병인, 식당보조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시장형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일자리 -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 지하철 택배, 세탁방, 도시락 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 사업단, 유기농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실버대리운전, 간병인 등

교육형 일자리는 월 20만원 사업기간 5개월, 부대경비 20만원으로 배정되었으며, 노인의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전문교육을 심화시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교육기관, 숲이 있는 산과 공원, 그리고 문화재 등에 출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사업은 시니어클럽의 고유사무와 유사한 사업으로 시장형사업은 일정기간의 국가지원 이후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인력파견형은 지역사회에서 수요처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후 노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자활과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활후견기관사업과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청소년자활지원관으로, 2005년 12월 시점에서 전국에 28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의 목적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인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③ 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④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⑤ 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⑥자활공동체 사업장예의 취업 연결 등이다. 이러한 운영 목적과 사업내용으로만 본다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오승환 외, 2005).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로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있다. 2006년 3월 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플랜으로 ‘Able 2010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2007년에는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5천명을 대상으로 공익형(장애인주차 단속요원 등), 복지형(중증장애인 동료상담요원 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4.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근로기회 확대, 저소득층 등에게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03-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6년에는 기존사업 이외에 광역형(600명) 및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600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18,714백만원('04년)→25,807('05년)→51,713('06년)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인원 역시 3,000명('04년)→3,910명('05년)→6,000명('06년)로 증대되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인건비 보조 월 700,000원 및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8.5%)가 지원되고 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 주체인 비영리단체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사업 취지와 다소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이다. 즉 사회적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공급중심의 공공 부문 일자리창출정책이 갖는 한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 종합계획과 추진전략이 정립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점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후의 후속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는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타 부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업종 및 전달체계 상의 차

별성이 부족하다. 특히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등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자가 후자에 비해 좀더 시장친화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민간의 창의성, 경쟁시스템, 자립지향성에 대해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IV.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인력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민 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은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시행 중인 저소득층 임금 지원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정부의 임금보전을 통해서만 일자리가 유지되고, 낮은 임금수준에서 비롯되는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공공 복지체계는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경우, 건강보험 34%, 기초생계급여 28%, 의료급여 27%에 비해 보건복지서비스는 9%에 머무르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적 양극화 시대에 사회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보육서비스의 확충, 노인수발보험 도입 추진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는 민간 시장에 의한 치료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투자는 부진하다. 그간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직접적 의료인력 투자에 집중하여, 요양·간병 등 간접인력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였으며,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방문보건·정신건강, 만성병 관리 등 공공 보건의료분야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인적자본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서비스 발굴, 확충과 함께 집행 인프라 정비 및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국제기준(OECD)에 따라 서비스업을 경제적 기능, 수요자의 차이, 정부의 재원 부담 등을 기준으로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4개 분야 중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사회 서비스업은 비시장성, 집단적 소비결정, 재정투입의 일반성 등이 특징이며, 사회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N, O, P 전체와 R, Q, S, M의 일부가 포함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표준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말한다(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2006).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서비스를 제3섹터(비영리단체 등)에서 공급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표3>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류

표준산업분류	사회서비스 해당 직종(예시)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 분류상 사회 서비스
O.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노인, 아동 등)	
R. 기타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개인 간병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포함
Q. 오락·문화·운동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사적지, 식물원, 동물원 등	
S. 가사서비스업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M. 사업서비스업	고용알선, 경비, 사업장 청소, 사무지원 등	

} 사회서비스일자리

(출처: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

<표4> 2006년도-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안) 총괄표

(백만원, 명)

사업명	부처명	'06년도		'07년(안)	
		예산	인원	예산	인원
합 계		675,650	111,616	1,444,189	212,514
여성부 합 계		297,194	71,419	386,832	81,959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	여성부	0	0	2,691	1,051
취약계층 가족 아동 양육지원	여성부	0	0	4,254	299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여성부	202,991	38,132	247,158	43,935
민간시설 영아반 인건비	여성부	94,203	33,287	132,729	36,674

사 업 명	부처명	'06년도		'07년(안)	
		예산	인원	예산	인원
복 지 부 합 계		113,174	14,478	403,540	67,682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복지부	0	0	41,196	10,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복지부	3,831	864	15,082	1,34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복지부	9,795	902	40,207	4,580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사업	복지부	890	120	2,222	30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복지부	0	0	29,577	11,000
노인돌보미 바우처	복지부	0	0	38,998	5,721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복지부	0	0	96,899	17,400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복지부	25,265	1,210	27,014	1,452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복지부	0	0	15,476	2,000
가사간병도우미	복지부	65,900	10,833	73,900	10,833
의료급여 관리(사례관리사)	복지부	3,686	234	6,699	496
정신보건센터운영	복지부	3,807	315	8,800	560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복지부	0	0	7,470	2,000
농 립 부 합 계		0	0	1,923	180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농림부	0	0	1,923	180
행 자 부 합 계		0	0	6,249	1,048
자원봉사 도우미	행자부	0	0	4,237	750
정보화마을프로그램매니저	행자부	0	0	2,012	298
교 육 부 합 계		8,700	4,154	151,831	20,815
장애아동특수교육보조원	교육부	8,700	2,513	19,704	4,000
특수교육지원 인력확충	교육부	0	0	6,520	604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교육부	0	0	23,887	5,876
방과 후 학교	교육부	0	1,641	101,720	10,335
청 소 년 위 원 회 합 계		9,306	900	14,610	1,3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위원회	1,606	300	2,576	400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아카데미)	청소년 위원회	7,700	600	12,034	900

사업명	부처명	'06년도		'07년(안)	
		예산	인원	예산	인원
문화재청 합계		0	0	4,761	416
고궁연장운영	문화재청	0	0	1,636	36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문화재청	0	0	3,125	380
문화관광부 합계		28,200	3,725	58,270	6,051
도서관등 문화시설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0	0	19,164	776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관광부	5,000	225	5,500	300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문화관광부	1,100	1,200	1,500	1,400
분야별 예술강사 풀체운영지원	문화관광부	8,900	1,050	17,800	2,175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부	13,200	1,250	14,306	1,400
환경부 합계		7,326	490	12,375	728
5대강 환경지킴이	환경부	205	7	4,256	200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	7,121	483	8,119	528
노동부 합계		51,713	6,000	152,707	15,000
사회적 일자리 제공	노동부	51,713	6,000	152,707	15,000
산림청 합계		160,037	10,450	251,091	17,335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산림청	1,614	159	11,355	920
숲가꾸기	산림청	158,423	10,291	206,925	12,500
산림보호강화	산림청	0	0	32,811	3,915

(출처: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내부자료, 2006)

<표4>는 정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계획하고 있는 2006년도, 2007년도 39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안이다. 2006년도의 경우 6,756억 5천만원 예산, 111,616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이 진행되었다면, 2007년도의 경우는 1조 4,441억 89백만원의 예산, 212,514명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2006년에 비해 예산은 2배 이상 증액되었고, 인원 역시 약 2배 정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는 상당부분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에 해당하나, 청년층 대상의 일자리사업도 적지 않게 배정되어 있다. 여성가정부의 보육시설 종사자, 민간시설 영아 보육교사,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아동복지교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분야별 예술강사 풀체, 생활체육지도사,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 등은 준전문직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 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9월 시점에서 각 부처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약 80개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로 제도화한 일자리 영역과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일자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노동부, 여성부 등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대표적인 제도화된 영역이다. 프로그램 단위로 제안된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정기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돌봄노동의 사회화. 저출산고령화사회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이 해당한다.

둘째, 미래 인적자원 개발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개발의 한 축은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 양성에 있다.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시장친화적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다.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만들기(학교청소), 방과후 학교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 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 분야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숲가꾸기사업은 1998년 이후 사업의 성과가 일정정도 검증되었다.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사업 수행의 핵심인역인 임업노동력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와 사회적 질병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한다. 방문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어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해야 한다.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 보완. 4대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수행체계 개편 및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시군구, 읍면동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고려한 일자리사업 개발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은 사회서비스 질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사업수행체계 개편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동시에 일자리사업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개편은 중앙 및 광역단위 사업수행체계 보완과 기초단위 자활후견기관 기능재편이 필요하다. 시니어클럽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증설이 필요하며, 재가복지센터 역시 확대 설립이 요구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추 조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V. 사회적 기업 지원법과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공동체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화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6년 9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의 배경으로 먼저,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저임금 단기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법·제도적 지원 기반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 지원을 검토하는 대기업이 많지만 고용상 책임의 한계, 정부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참여가 원활치는 못한 실정이다. 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연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셋째,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공동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타 법률에 근거한 지원 등에 의

해 자생적인 사회적기업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제3섹터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은 지원 대상자와 지원주체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5> 참조). 직접지원은 특정 대상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하는 형태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창업상담에서부터 재정지원, 경영지원, 영업지원,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직진단과 모니터링 역시 직접지원의 방식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간접지원은 사회적기업 운영에 우호적이고 유리한 개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일컫는다. 산업단지와 같은 사회적기업 단지 조성, 사회적기업 관련법과 지원제도 마련 등과 같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표5>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구분	성격	종류
직접 지원	해당 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	창업상담 및 지원, 조직진단 및 모니터링, 교육, 경영지원, 자금조달, 영업지원 등
간접 지원	사회적기업 운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사회적기업 단지조성, 관련법의 제정, 지원체제 구축 등

(출처: 문보경, 2006)

노동부는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사업 중 광역형사업과 기업연계형사업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가사간병, 장애아가족지원 및 통합교육, 산조도우미, 결식이웃에 대한 급식, 컴퓨터 등 재활용판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보고 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 2007년의 경우 약 75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노동부, 2006).

현재 노동부가 입법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지원법의 지원 내용을 보면, 첫째,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서비스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지원 그리고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둘째, 보호된 시장의 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적기업 연계기업은 실시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하거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정부출연기관 등

에 설치하거나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업무를 위탁한다. 사회적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회계 등 전문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며, 외국의 사회적기업 경영 모델 및 정부지원제도 연구, 사회적기업 경영자 및 실무자 교육, 홍보 기능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그 자체가 공공성이 크고 고용창출의 필요성이 클 뿐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VI. 사회 서비스 확충과 사회서비스 인력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빈곤탈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생계보장은 물론이고 교육, 고용분야의 투자 확대는 탈빈곤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복지 확충은 곧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의 확대는 이미 경기부양과 고용확대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보건의료, 아동보육, 노인 및 장애인 분야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투자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원하는 노동력 공급이 확충되며,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신속하게 매칭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직업훈련의 제도적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의 확대는 사회복지인력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표4>에서 본 것처럼 2007년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67,682명, 교육인적자원부 20,815명, 여성가족부 81,959명, 노동부 15,000명 등 총 212,514명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는 상당부분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이지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제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청년층 대상의 일자리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전문인력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은 물론이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기관의 확충과 보완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확대와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

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을 바우처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집행하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역시 바우처 지원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급방식의 변화는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와 품질 관리, 서비스 공급인력 교육훈련 및 관리 등 다양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인력문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본다. 그 동안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위주의 전통적 취업시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위주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흐름에서 탈피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특히 근로연계 복지, 지역사회 차원의 사례관리, 교육복지 등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노대명 외(2004),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노동부.
- 노대명 외(200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노동부(2006),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보고자료.
- 문보경(2006),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경기도 발표자료
-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2006),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사업 현황』, 자료집.
- 신명호·김홍일(2002),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동향과 전망』 53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신명호(2003), “시장진입형 생산공동체의 경쟁력과 그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 한울.
- 오승환 외(2005), 『청소년 자활지원관 평가 및 운영모델 연구』, 보건복지부·호남대학교.
- 이인재(2006), “사회적 기업 컴윈 성공요인과 발전과제”, 『동향과 전망』 66호,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 이인재·이문국·강성추(2004),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 방안연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이인재 (2003), “한국 자활사업의 동향과 과제”, 『동향과 전망』 58호, 한국사회과학연

구소.

Begg, Iain(2001), "EMU and employment", 『Social Models in the EMU: convergence? coexistence ? - The Role of Economic and Social Actors』, EESC pamphlet series.

Ferrera, Maurizio(2001), "EMU and protection", 『Social Models in the EMU: convergence ? coexistence ? - The Role of Economic and Social Actors』, EESC pamphlet series.